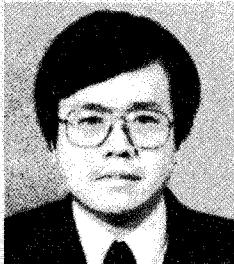


통신시장 구조 개편과 공정경쟁 정책의 과제

문제의 제기

지난 7월 정부는 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여기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 가지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91년과 94년의 1, 2차 통신시장 구조개편에 의해 점진적으로 경쟁체제를 구축해 오던 것을 이번에는 전면적인 경쟁체제의 조기 구축을 통해 경쟁체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단계 조치로 현행 법령 하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규 기간통신사업자를 1996년 상반기 중에 허가할 계획이다. 2단계로는 정부의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공고가 있어야만 허가 절차가 시작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법규를 개정하여 정부의 허가신청 공고 없이도 기업들이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면적인 국내 경쟁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 WTO 협상 결과에 따라 관련 법규를



조 신

통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재개정하여 국내 사업자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외국 사업자도 포함하는 글로벌 경쟁체제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정책방향은 한국통신이 국가기간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도적 사업자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한국통신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영상의 자율성·융통성을 확대하고 내부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는 경영혁신 유도로 경쟁력을 확보하게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신사업자간의 공정경쟁 제도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즉, 주도적 통신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간의 유효한 경쟁여건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경쟁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통신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통신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계획은 통신시장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제3차 통신시장 구조개편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의 3차 구조개편은 경쟁확대와 규제완화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이 그 내용 또한 상당히 획기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개편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쟁사업자의 추가 진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통신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정경쟁정책의 추진이 필수적이다.

이 글에서는 공정경쟁정책을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정책(antitrust regulat-

ion)으로 나누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이슈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는데, 다음 절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통신서비스산업 시장구조를 개관한다.

통신서비스 산업 시장구조의 공정경쟁 정책의 기본 방향

통신서비스사업자는 통신망 보유 여부에 따라서 기간통신 사업자와 부기통신 사업자로 나누어진다. 기간통신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비해 부기통신사업자는 신고만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표 1〉은 기간통신 서비스 부문별로 현재의 시장구조와 '96년

도 신규 통신사업자 허가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아직은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한국통신이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완전한 경쟁상태에 접어 들었다고 보기 힘들다.

시장구조 측면에서 보면 아직 독점 상태로 남아 있는 서비스 부문이 많이 존재하며, 경쟁이 도입된 부문에서도 제한적인 진입만이 허용된 형편이어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경쟁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3차 구조 개편으로 앞으로는 더 많은 신규 진입이 예상되지만 여전히 주요 시장의 독과점적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과는 달리 서비스간에 강한 수직적 결

합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연계된 서비스 중에서 하나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수직적 결합 구조를 가진 사업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 시장 점유율을 측면에서도 신규사업자의 점유율이 그리 크지 않은 상태여서 여전히 지배적인 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끝으로 사업자의 경쟁 의지를 보면 표면적으로 광고 경쟁, 판촉 경쟁 등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으나, 그들이 공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을 통한 실질적 경쟁을 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업자들의 기본전략은 적당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함으로써 이윤을 나누어 갖자는 것으로 보인다.

〈표 1〉통신서비스 산업의 시장 구조

서비스 부문	기존 사업자	'96년 허가 예정 신규 사업자
시내전화	1(한국통신)	당분간 독점 예정
시외전화	2(한국통신, 데이콤)	'96년 이후 허가 예정
국제전화	2(한국통신, 데이콤)	1
전용회선	2(한국통신, 데이콤)	적격 사업자 모두 허가
이동전화	2(한국이동통신, 신세기)	
무선휴대	전국 사업자 1(한국이동통신) 지역 사업자 10(수도권 2, 나머지 지역 1)	수도권 1
개인휴대통신(PCS)	—	전국 사업자 3
주파수공용통신(TRS)	전국 사업자 1(한국항만전환)	전국 사업자 1 지역 사업자 9(지역별 1)
발신용휴대전화(CT-2)	—	전국 사업자 1 지역 사업자 10(수도권 2, 나머지 지역 1)
무선테이타		전국 사업자 3

이러한 논의에서 보듯이 단순히 경쟁을 도입했다는 사실이 곧 경쟁적 시장원리의 정착,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국민 후생의 극대화라는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시장이 경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의 실현이 불가능해질 것이므로 시장이 경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경제적 규제 정책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정책으로 나누어진다. 경제적 규제는 요금규제와 진입규제를 의미하며 전통적으로 독점산업에 대해서 가해지는 규제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정책은 경쟁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 정책으로서, 흔히 공정경쟁 정책이라고 말할 때는 이 독점규제를 의미한다.

통신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정착을 위해서는 경제적 규제 정책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정책의 합리적인 정책 혼합(optimal policy mix)이 필요하다. 경제적 규제 정책은 시장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시장 메카니즘과 양립할 수 없으며, 경쟁도입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아직 독점적 서비스 부문이 남아 있으며 경쟁이 도입된 부문에서도 수직적 결합 구조를 지닌 자배적 사업자의 독점력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그 사업자에 대한 한시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적 규제는 시장기능이 빨리 자리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기능의 정착 이후에는 없어지거나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정책은 시장기능을 “촉진”하는 것이므로 시장이 완전경쟁 시장이 아닌 한 항상 그 필요성이 있다. 통신시장에서도 경쟁 사업자가 출현함에 따라 상대방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반경쟁적인 행위가 예상되므로 독점규제 또는 공정거래 정책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와 같은 과도기에 경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두 정책 대안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입 규제 정책

진입제도 측면에서 향후 쟁점으로 부각될 부분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지분제한 제도의 개선이다. 유선 전화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기간 통신사업자에 비해 더 엄격한 지분 제한을 가하고 있어서 10% 이상 지분 소유자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기존의 무선사업자가 유선사업에 진출하는 데 실질적인 진입장벽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경영권 보장에도 애로로 작용할 수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지분 제한 완화 문제는 경제력 집중 배제라는 통신정책 외적인 논리가 지배해 왔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개선시기와 완화정도에 대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외국인의 통신시장 참여 문제는 1996년 4월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WTO 기본통신협상의 결과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2차 구조개편까지만 하더라도 대외개방 압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외국기업의 공격에 대해 국내의 통신시장을 막아내는 데 치중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근래 들어서는 외국기업의 개방 압력에 단순히 수세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 통신시장을 보다 효율화하여 통신기반 구조를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같은 발상의 전환은 환영할 조치이다. 외국기업의 진입이 우리의 통신시장 발전에 기여하려면 우리 시장에 렌트가 매우 적어 새로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 보급에 주력해야 할만큼 경쟁적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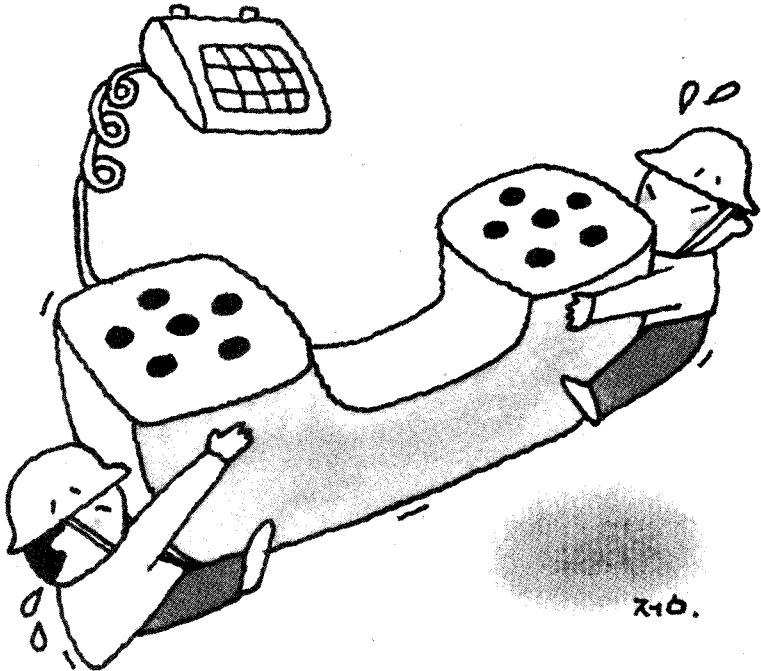
우리 시장은 아직도 충분히 경쟁적이지 못하며, 이는 외국기업의 진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환경이 아직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서비스 경쟁력이 미국에 뒤지는 EU의 경우, EU 차원의 망 자유화를 신속하게 실천하여 경쟁력을 쌓아 대외협상

력을 제고한다는 전략으로 이미 1998년 1월부터 통신망 경쟁에 합의한 바 있다. 이런 모델을 교훈으로 국내 기업간의 경쟁을 통해 내부의 경쟁력을 제고한 후 대외개방에 임해야 외국 기업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시내전화 경쟁에 대한 빠른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3차 구조개편에서 시내망 경쟁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 초고속 통신망의 구축 등에의 영향, 케이블 TV 전송망의 구축 상태를 보아 시내망의 경쟁 여부를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발표해서 다소 소극적인 입장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신규 진입압력과 대외 개방의 물결은 시내·시외·국제를 막론하고 무차별적으로 밀려들고 있어서 우리나라로 시내망 경쟁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조만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케이블 TV 전송망을 통한 전화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미 시내망에 경쟁을 도입하였거나(영국, 핀란드) 경쟁을 확대하려는 나라가 나타나고 있으며(미국, 일본), 전체적으로 망 고도화를 위해 경쟁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다. 물론 시내전화 경쟁에 대해서 중복투자 등의 문제를 들어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술



740.

적 추세를 볼 때 결국은 시내전화 시장에서의 경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통신망이 발전하여 하나의 통신망으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진입규제 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케이블 TV를 통한 전화서비스 제공이나 무선호출을 통한 데이터통신 서비스 제공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통신망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위성통신의 등장은 지역 구분을 흐리게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진입규제 제도는 망과 서비스의 이중적 기준에 의하고 있다. 즉, 통신망의 보유 유무에

따라 기간·부가통신사업자로 나누고, 다시 정보의 지역(시내·시외·국제), 정보 형태(음성·데이터·영상), 매체(유선·무선), 공급 기반(설비 기반·재판매 기반), 전달 양식(양방향·분배)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시내전화는 독점, 시외·국제는 경쟁이며, 음성은 허가, 데이터·영상은 신고로 하고 있다. 한편 유선전화는 별도의 지분 제한을 가하고 있고 재판매 전화서비스는 금지하고 있으며, 양방향 서비스만을 통신 영역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비해 일방향 서비스는 방송 영역으로 공보처가 관장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케이블 TV 망을 통한 전화서비스나 무선호출망

을 통한 데이터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형편이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규제로 막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향후의 허가제도는 최종 서비스의 형태 기준이 아니라 망에 기준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규제기관은 망(무선은 주파수)을 기준으로 규제를 운영하고, 그 망을 사용하여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일임하는 방식으로 허가제도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

요금 규제 정책

요금 규제의 완화는 경쟁도입과 함께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규제완화 대상이다. 현재의 요금 규제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요금 인하를 하고 있어 과점적인 통신시장에서 사업자간의 담합을 정부가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를 냉고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경쟁도입 국가에서는 신규사업자에 대한 요금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기본 통신에 경쟁을 도입한 나라 중 신규사업자에 요금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 뿐이지만, 일본의 경우 신규사업자에 대한 요금 규제를 하더라도 상당한 폭의 자율성을 부여해 경쟁도입 이후에 많은 요금의 인하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사업자에 대해 요금 규제를 할 뿐 아니라, 기존 사업자의 요금 인하에

대해서도 상당한 규제를 가하고 있어 경쟁도입 이후에 요금 인하의 정도 또한 미흡하며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기존사업자에 대해서도 대체로 과거의 엄격한 보수율 규제 방식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한 가격상한 규제 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가격상한 방식을 도입하면 규제절차가 단순해짐에 따라 규제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투명성 또한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 측면에서는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이윤 증가분을 자신이 가질 수 있게 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요금 규제의 개선방향은 모든 통신사업자의 요금을 신고로 완화하되, 역무별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만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다른 부문에 비해 경쟁이 상대적으로 많이 진척된 국제전화, 무선 호출 등에 대해서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도 가격상한규제 방식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최근 일부 서비스(주파수 공용통신, 제2무선 호출사업자의 요금 등)에 대한 요금 규제를 신고로 완화했고, 일부 서비스에 대해선 가격 상한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일단 긍정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차후 법 개정에 있어선 요금 규제에 있어서 신고가 원칙이며, 인기는 예외

〈표 2〉 주요 국가의 요금 규제 정책

국 가	규제 대상		규 제 방 식
	기존사업자	신규사업자	
미 국	○	×	보수율 → 가격 상한 규제
일 본	○	○	보수율 규제
영 국	○	×	가격 상한 규제
호 주	○	×	가격 상한 규제
캐나다	○	×	가격 상한 규제 고려 중
뉴질랜드	×	×	없음
스웨덴	○	×	가격 상한 규제
한 국	○	○	보수율 규제
독 일	○	×	가격 상한 규제
프 랑 스	○	×	가격 상한 규제

○ : 규제, × : 비규제

자료 : 조신(1994), “21세기를 조망한 통신서비스산업 정책방향”, 한국통신학회 심포지움

라는 입장을 확립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에 합치하는 정책방향이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정책

1. 공정경쟁 관련 제도의 정비

경쟁도입 후에 정부는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적인 행동을 막고 사업자간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조치들은 통신시장에서의 공정경쟁 보장과 독점적 행위 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로서, 경쟁을 먼저 도입한 선진국들도 이러한 정책들을 경쟁도입과 함께 시행하였다.

현재의 공정경쟁 관련 제도에는 「통신망간 상호접속기준에 관한 고시(92. 12. 제정, 95. 9. 개정)」, 「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요금산정기준(92. 12. 제정, 94년말 개정)」, 「공정경쟁 보장 지침(93. 7. 제정)」, 그리고 「전기통신사업 회계규칙(94. 8. 제정, 95년말 개정 예정)」 등이 있다. 제도적인 측면만 보면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손색이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의 운영과 정책적 통일성 측면에서 보면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 지금까지 정부의 경쟁정책은 대체로 경쟁사업자를 진입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지, 이를 경쟁사업자들이 실질적인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종합적인 추진 체계와 계획의 부재이다. 여러 가지 정책이 다양하게 시행에 옮겨지고 있으나, 개별 정책들이 전체적인 방향성 없이 분산 추진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책 또는 지침간의 상호 연관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원가계산의 기초가 되는 회계규칙의 기반 위에 설비제공, 접속료 제도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호접속기준」이나 「설비제공 대가기준」이 나온 후에야 「회계정리 규칙」이 최근에 제정된 상황이다.

둘째, 정책 입안자의 시행 의지 및 실현성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일부 규정들은 그것을 규정 그대로 엄격하게 시행하기보다는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제도 마련에 그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예를 들어 「공정경쟁 보장 지침」에 따르면 상호보조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1994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도, 요금정책에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려는 의지 또한 매우 빈약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규제 절차의 일관성·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대부분의 지침이 사업자의 행동을 규율하는 내용은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 개입 시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는 자세히 규정하고 있

지 않아서 “규정”이 아니라 “행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업자 간 이해관계나 분쟁을 조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규제가 투명성,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심지어 정부가 자의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있을 수 있다.

2. 시내망 분리

공정경쟁 보장과 관련된 대부분의 쟁점은 사실 한 사업자가 시내망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한국통신이 시내와 시외망을 함께 운영하는 상태에서 시외전화에 경쟁이 도입된다면 당연히 한국통신은 자신의 시내망을 시외전화 시장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해 배타적으로 사용할 유인(incentive)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업자끼리의 공정경쟁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불공정경쟁의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시내망을 어느 한 경쟁사업자의 소유로 하지 않고 분리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시내망 분리가 공정경쟁을 확보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따라서 경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시내망을 분리하면 시내망과 시외망의 공유에서 오는 범위의 경제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 고 걱정하기도 하지만, 만약 시

내망과 시외망에서 범위의 경제가 매우 커다면 애초에 시외전화에 경쟁이 도입되지 않았을 것이다 점에서 범위의 경제 존재 여부와 그 정도는 불투명한 편이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경쟁을 도입한 나라들이 단순히 독과점규제의 논리에 입각하여 시내망 분리에 동참하고 있지 않음을 염두에 둘 때 시내망 분리를 단행했을 때 발생할 문제 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수반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시내망 분리 여부는 경쟁상태와 한국통신의 공정 경쟁여건 확보 의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경쟁이 전혀 기대한 정도로 진행되지 않거나 한국통신이 지나치게 반경쟁적인 행동을 하면 다른 비용을 치르면서도라도 시내망 분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3. 통신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 강화

경쟁확대와 대외개방은 사업자간 분쟁의 증대를 의미하며, 이는 규제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규제관련의 핵심이 되어야 할 통신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은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 조직의 측면에 있어서 상임위원 및 사무국이 부재하여 인력적인 측면에 있어서 취약하고, 기능면에 있어서도 심의기능 및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일부 재정기능만을 보유

하고 있을 뿐이다.

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는 지배적 사업자 요금 인가 권한, 사업자 허가 추천 권한, 분쟁해결 기능, 그리고 불공정 경쟁에 대한 조사 발동권, 처벌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요금 인가 방식, 규제절차에 대한 고시 등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권한의 부여도 필수적이다.

조직의 재정비 측면에 있어서는 일정 수의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여 규제업무에 전담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회를 보좌하는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법률가, 회계사, 경제학자 등의 관련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실무 및 행정을 담당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이런 조직의 재정비는 정보통신부 내 규제담당 인력과 조직을 재조정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신위원회의 강화는 1, 2차 구조개편 때에도 계속 제기되었던 것이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통신위원회의 기능과 조직 강화 없이 독과점규제 및 공정거래 정책의 원활한 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외개방이 불과 2~3년 앞으로 다가올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는 지금, 통신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번 구조개편에서는 통신위원회의 기능 강화가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맺음말

이 글에서 우리는 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취해진 일련의 경쟁도입과 규제완화 정책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쟁촉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경쟁촉진을 위한 공정경쟁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논의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제 우리는 정부의 개입이 당연한 것(default)이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왜 그러한 개입이 불필요한지를 입증해야 하던 시기에서 벗어나, 정부의 불개입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왜 이러한식의 정부 개입이 필요한지를 정당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가 정부의 역할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는 극단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과연 어느 정도 정부와 시장이 그 기능을 맡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좀더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과제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부의 개입이 지금보다 줄어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개입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